

199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1. '96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및 규모 ...	121
가.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	121
나. 예산(안) 총규모	122
2. '96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123
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	123
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	124
3. 검토내역	125
가. 세입예산	125
나. 세출예산	128
4. 검토의견	131

1. '96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방향 및 규모

가. 예산(안) 편성기본방침

- 국가지원사업 확정에 따른 사업비 전액 계상
-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 최대한 억제
- 시군이 시행하여야 할 사업은 도비지원을 지양하고 도에서 시행하여야 할 사업에 우선 투자

□ 편성 기준

<세입예산>

- 지방세
 - '95 징수실적, 지역내 경제여건 등을 판단하여 계상
- 세외수입
 - 순세계잉여금 정산결과 추가계상액 반영
 -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정산결과 반영
- 국고의존수입
 -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재원은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
(보조금, 교부세, 양여금, 기금 등)

<세출예산>

- 필수경상경비
 -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조정
 - 기타 법정·의무적 경비
- 투자사업비
 - 국가지원사업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른 사업 부담액
 - 도지사 지시사업, 시·군 및 주민건의사업등
 - 사업계획 변경 또는 취소에 따른 예산조정

나. 예산(안) 총규모

○ 예산(안)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 감	
	금 액	%	금 액	%	금 액	%
합 계	886,869,515	100	794,805,726	100	92,063,789	11.6
○ 일반 회 계	652,952,861	73.6	587,701,886	73.9	65,250,975	11.1
○ 특별 회 계	233,916,654	26.4	207,103,840	26.1	26,812,814	12.9

- '9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8,868억 6,951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7,948억 572만 6천원보다 11.6%가 증액된 규모로 요구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11.1%인 652억 5,097만 5천원이 증가한
 6,529억 5,286만 1천원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9%인 268억 1,281만 4천원이 증가한 2,339억 1,665만
 4천원 규모임.

2. '96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 감	
	금 액	%	금 액	%	금 액	%
합 계	886,869,515	100	794,805,726	100	92,063,789	11.6
일 반 회 계	652,952,861	73.6	587,701,886	73.9	65,250,975	11.1
· 지 방 세	147,741,000	16.6	132,041,000	16.6	15,700,000	11.9
· 세 외 수 입	111,338,087	12.6	92,630,056	11.6	18,708,031	20.2
-경상적세외수입	12,358,767	1.4	9,710,828	1.2	2,647,939	27.3
-임시적세외수입	98,979,320	11.2	82,919,228	10.4	16,060,092	19.4
· 지 방 교 부 세	150,631,844	17.0	148,872,844	18.7	1,759,000	1.2
· 지 방 양 여 금	71,784,581	8.1	57,182,308	7.2	14,602,273	25.5
· 보 조 금	166,410,349	18.7	155,428,678	19.6	10,981,671	7.1
· 지 방 채	5,047,000	0.6	1,547,000	0.2	3,500,000	226.2
특 별 회 계	233,916,654	26.4	207,103,840	26.1	26,812,814	12.9
· 공기업특별회계	201,468,742	22.7	186,524,660	23.5	14,944,082	8.0
-지역개발기금	139,434,032	15.7	129,218,124	16.3	10,215,908	7.9
-공영개발사업	62,034,710	7.0	57,306,536	7.2	4,728,174	8.3
· 기타특별회계	32,447,912	3.7	20,579,180	2.6	11,868,732	9.1
- 의료보호기금	19,005,612	2.1	15,820,457	2.0	3,185,155	20.1
-대청호특별대책 지역환경기초 운영관리	2,083,577	0.2	2,200,000	0.3	△116,423	△5.3
-농어촌소득 개발기금	3,558,723	0.4	2,558,723	0.3	1,000,000	39.1
-중평지방공업 단지조성사업	7,800,000	0.9	0		7,800,000	100

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	금 액	%	금 액	%
합 계	886,869,515	100	794,805,721	100	92,063,789	11.6
일 반 회 계	652,952,861	73.6	587,701,886	73.9	65,250,975	11.1
· 인 건 비	48,914,524	7.5	47,953,067	8.2	961,457	2.0
· 물 건 비	43,204,826	6.6	40,306,217	6.9	2,898,609	7.2
· 이 전 경 비	146,941,368	22.5	135,063,217	23.0	11,878,262	8.8
· 자 본 지 출	380,337,813	58.2	339,447,547	57.8	40,890,266	12.0
· 용자 및 출자	9,660,000	1.5	7,584,000	1.3	2,076,000	27.4
· 보 전 재 원	2,320,027	0.4	2,320,027	0.4	0	0.0
· 내 부 거 래	12,555,611	1.9	6,356,776	1.1	6,198,835	97.5
· 예비비 및 기타	9,018,692	1.4	8,671,146	1.5	347,546	4.0
특 별 회 계	233,916,654	26.4	207,103,840	26.1	26,812,814	12.9
· 지역개발기금	139,434,032	59.6	129,218,124	62.4	10,215,908	7.9
· 공영개발사업	62,034,710	26.5	57,306,536	27.8	4,728,174	8.3
· 농어촌소득 개발기금	3,558,723	1.5	2,558,723	1.2	1,000,000	39.1
· 대청호특별대책 지역환경기초 시설운영관리	2,083,577	0.9	2,200,000	1.1	△116,423	△5.3
· 의료보호기금	19,005,612	8.1	15,820,457	7.6	3,185,155	20.1
· 중평지방공업 단지조성	7,800,000	3.3	0	0	7,800,000	100

3. 검토내역

가. 세입예산

<일 반 회 계 >

- 자체재원인 지방세의 경우 보통세인 취득세는 기정예산보다 13.4%인 71억원이 증액된 599억 6,800만원이고,
등록세는 기정예산보다 13.3%인 86억원이 증액된 733억 2,900만원임.
- 취득세, 등록세는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과 '96년도 세목별 특수요인을 분석, 토지건물등 과세시가 표준액 조정율, 부동산 경기의 여건 변동, 과세물건의 증가 추이등을 감안하였고,
-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수수료 수입은 기정예산 20억 1,087만 2천원보다 23.2% 감소된 15억 4,274만 5천원으로 순환수렵장 운영수수료 및 보건검사수수료등 증감 계상
- 징수교부금 수입은 31억 1,606만 6천원으로
수질개선 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징수 교부금등을 계상
-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기정예산 331억 8,401만 6천원보다 18.8%인 49억 399만 2천원이 감액된 282억 8,002만 4천원으로 잡종재산매각 및 농촌진흥원 재산매각에 따라 수입이 감소되었으며,
- 이월금은 154억 2,377만 1천원이 증가된 554억 2,377만 1천원으로 '95결산 이월금과 국고보조금사용 잔액을 계상하였고
- 기금수입은 14억 1,825만 1천원이 증가된 24억 2,665만 8천원 규모임.
- 부담금은 34억 4,977만 8천원이 증가된 95억 3,850만원으로
오창과화산업 지방공업단지 사업비 부담금등이 증액되었고
- 잡수입은 기정예산 13억 4,179만 2천원보다 50.1%인 6억 7,228만 4천원이 증가된 20억 1,407만 6천원으로 이는 '95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임.

- 기부금 및 기금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40.6%인 14억 1,825만 1천원이 증가된 24억 2,665만 8천원임.

○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7.6%인 273억 4,294만 4천원이 증액된 3,888억 2,677만 4천원으로,

-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1.2%인 17억 5,900만원이 증액된 1,506억 3,184만 4천원으로 이는 증액교부금 11억 3,800만원과 특별교부세 6억 2,100만원이며,

-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보다 25.5%인 146억 227만 3천원이 증가된 717억 8,458만 1천원으로 이는,

· 정주권 개발사업비	16억 4,615만원
· 오지개발사업비	19억 4,940만 9천원
·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2억 7,440만원
· 분뇨처리시설	17억 7,400만원
· 하수도관 정비	4,300만원
· 소하천 정비	3억원
·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16억 5,600만원
·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	30억 110만 1천원
· 지역개발사업비	10억 2,534만 3천원
· 청소년 육성사업비	7,550만원
· 군도정비 사업비	13억 4,502만원
· 농어촌도로 사업비	△ 577만 2천원
· 문화마을 조성	15억 1,812만 2천원등이

계상됨.

- 국고보조금으로는 기정예산보다 7.1%인 109억 8,167만 1천원임 증액된 1,664억 1,034만 9천원임.

○ 지방채에 있어서는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과 음성소방서 지방청사정비기금 35억원을 계상함.

< 특 별 회 계 >

-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339억 1,665만 4천원으로서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가 2,014억 6,874만 2천원, 기타 4개 특별회계가 324억 4,791만 2천원임.
 -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102억 1,590만 8천원으로,
 - 용자금 이자 수입 △ 9,937만 3천원
 - 예금이자 10억원
 - 채무 면제이익 650만 7천원
 - 공채발행 예상액 93억 877만 4천원
 -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47억 2,817만 4천원으로,
 - 예금이자 수입 5억 5,000만원
 -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1억 1,999만 9천원
 - 이월금 38억 4,097만 5천원
 - 전년도 미수금 2억 1,720만원이며,
 -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1억 8,515만 5천원으로,
 - 순세계 잉여금 2억 4,690만 4천원
 - 도비 부담금 5억 8,349만 2천원
 - 시·군 결산반환금 2,079만 2천원
 - 국고보조금 23억 3,396만 7천원이며,
 -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2억보다 5.3%인 1억 1,642만 3천원이 감액된 20억 8,357만 7천원으로 환경기초시설운영비 부담액이 감소됨.
 - 농어촌 소득개발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5억 6,262만 5천원보다 39.1%인 10억원이 증액된 35억 5,872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 10억원을 계상함.
 - 중평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78억원으로
 -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용자금 38억원
 -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용자금 40억원임.

나. 세출예산

<일반회계>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877억 188만 6천원보다 11.1%인 652억 5,097만 5천원이 증액된 6,529억 5,286만 1천원 규모임.

○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설명해 드리면,

- 인건비로는 기정예산보다 2.0%인 9억 6,145만 7천원이 증액된 489억 1,452만 4천원으로

이는 공무원 정원이 증원됨과 미화요원인부임 단가가 인상된데 기인함.

- 물건비로는 기정예산보다 7.2%인 28억 9,860만 9천원이 증액된 432억 482만 6천원으로

이는 인원증원에 따른 여비 증액분, 의원님들의 기준경비등에 따른 경비가 증액된데 기인함.

- 이전경비로는 기정예산보다 8.8%인 118억 7,826만 2천원이 증액된 1,469억 4,136만 8천원으로

이는 자치단체이전경비, 차입금 이자등이 증액된데 따른 것임.

- 자본지출은 기정예산보다 12.0%인 408억 9,026만 6천원이 증액된 3,803억 3,781만 3천원으로

이는 시설비등이 증액된데 기인됨.

- 용자 및 출자로는 기정예산보다 27.4%인 20억 7,600만원이 증액된 96억 6,600만원으로

이는 통합금융기관 용자금이 증가된데 따른 것임.

- 보전재원은 증감없음.

-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보다 97.5%인 61억 9,883만 5천원이 증액된 125억 5,561만 1천으로,

이는 회계 상호간 전출금이 증액된데 기인함.

-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보다 4.0%인 3억 4,754만 6천원이 증액된 90억 1,869만 2천원임.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 일반행정비	18억 6,940만 7천원
- 사회개발비	208억 173만 7천원
- 경제개발비	287억 223만 3천원
- 민방위비	38억 5,601만 4천원
- 지원 및 기타 경비	100억 2,158만 4천원

이며,

○ 주요 경비별로는

첫째, 인건비 및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로 176억원으로

- 인건비 및 기준경비	35억원
- 징수교부금	91억원
- 특별회계 전출금	50억원이며,

둘째, 비도가 정하여진 사업비로

- 재난관리종합 시스템 구축등 지방교부세사업 26건	8억원
- 정주권 개발등 지방양여금사업 13건	227억원
- 농어촌공영버스운영등 국고보조사업 97건	108억원
-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터운영등 중앙기금사업 22건	15억원
- 중소기업구조조정 자금등 지방채사업 2건	35억원
- 청주과학사업단지 조성사업	35억원
-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	3억원등

모두 43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셋째, 중점투자 사업비는 126억원으로

- 사회복지분야	11억원
- 농수산분야	8억원
- 도로·교통분야	54억원
- 환경보전 및 재해예방분야	26억원
- 지역개발분야	8억원
- 문화·체육분야	4억원
- 일반행정분야	15억원임.

< 특 별 회 계 >

○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102억 1,590만 8천원으로

- 일용인부임인건비 45만 3천원
- 상수도 사업 시설확장 및 개량의 6건 212억
- 자본 예산 예비비 △109억 8,454만 5천원을

계상함.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47억 2,817만 4천원으로

- 공영개발사업비용에 있어서는
 - 영업비용 5,918만 4천원

계상되었으며,

- 자본적 지출에 있어서는
 - 채고재산 7억 1,798만원
 - 가동설비자산 1,730만원
 - 비가동설비자산 1억 1천원
 - 예비비 38억 3,370만 7천원을

각각 계상함.

○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1억 8,515만 5천원으로

- 사무비 1,044만 1천원
- 의료보호비 29억 1,745만 8천원
- 예비비 2억 5,725만 6천원을

계상함.

○ 농어촌 소득 개발기금 특별회계는

- 융자금 지원사업비를 계상하였고

○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 시설 운영관련 특별회계는

대전직할시 및 충청남도과 본도의 관련단체에서 부담하는 분담금을 2개의 하수처리장과 5개의 간이 오수처리장 운영비로 감액 계상함.

○ 중평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는 신규사업으로 공단 조성토지보상금등을 계상함.

4. 검토의견

199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6,529억 5,286만 1천원, 특별회계 2,339억 1,665만 4천원, 총 8,868억 6,951만 5천원규모로 기정예산액 대비 11.6%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양여금,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주된 재원으로하여 그중 필수경비 부족분을 충당하고 나머지 재원으로 각종 투자사업에 배분하고 있어 적은 재원으로 다양하게 분출하고 있는 지방재정 수요에 적절히 대응한 노력이 보이거나 몇가지 보완되어야 할 사항을 사례별로 살펴 보면,

첫째,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국가지원사업의 확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교부세, 양여금의 변경내시분 예산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매년 당초예산심의시 국회의결이 늦어짐을 이유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한 채 수정예산을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는 현 수정예산 편성제도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둘째, 세입추계의 현실화 노력

지방세의 경우 157억원 추가 증액함으로써 취득세와 등록세는 총 1,332억 9,700만원에 달하고 있음.

세입추계는 세수 및 교부세사업 등을 정밀 분석하여 발생예산액 전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추경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매년 추경예산편성이 관례화 됨에 따라 예산편성에 따른 행정력의 소모는 물론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근본적으로 당초예산편성시 세입추계를 현실화하여 지방재정운영의 건전화를 도모해야 할 것임.

셋째,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경비의 추가계상

'96 당초 예산심의시 불요불급한 경비 또는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된 일부경비에

대하여 삭감조치 하였으나, 금회추경예산(안)에 삭감된 예산의 일부가 다시 계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소상히 설명하여야 할 것으로 봄.

본예산 삭감경비의 추경계상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당초예산 삭 감 액	추경예산 계 상 액	비고
○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기금 조성	114,000	114,000	P 50
○ 관서당경비 (POOL)	70,000	80,000	P 55
○ 국내여비 (POOL)	100,000	100,000	P 56
○ 민간경상보조(POOL)	200,000	200,000	P 56
○ 도청어린이집 시설	110,966	75,000	P 93
○ 여성회관 신축부지 진입로 토지 매입비	205,000	212,200	P 207
○ 1지역 1명품 특화사업	80,000	400,000	P 237

내재, 예산 감액 사업과다 발생

금회 추경에서 기정예산을 감액하거나 사업계획 자체를 변경 취소하여 기확보된 예산을 전액감액 조치하려는 사업의 예산액이 76억여원으로 이는 결국 막대한 예산을 5개월동안이나 사장시킨 결과를 가져왔음.

따라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변경·취소하거나 예산을 감액할 경우에는 예산을 심의 의결한 의회 의견을 존중하는 측면에서라도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조정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예 산 감 액 사 업

(단위 : 천원)

사 업 명	당초예산 승 인 액	추경예산 삭 감 액	비고
○ 충북 100년 기념행사 가장행렬 임차료	20,000	20,000	P 91
○ 충북 100년 기념행사 조형물제작 (실시설계비)	11,850	11,850	P 97
○ 충북 100년 기념행사 조형물제작 (시설비)	485,000	485,000	P 97

(단위 : 천원)

사 업 명	당초예산 승 인 액	추경예산 삭 감 액	비고
○ K B S 열린 음악회 유치	60,000	60,000	P 111
○ 충주호수경고원 조성사업 (시설비, 시설부대비)	1,500,000	1,500,000	P 326
○ 소하천시범 모델 사업	700,000	700,000	P 327
○ 청풍교 가설	4,745,700	4,745,700	P 331

다섯째, 종축장 및 산림환경연구소운영에 대하여

세입에서 농촌진흥원재산매각 수입을 50억여원을 감액하여 세출에서 종축장운영 21억원과 산림환경연구소운영 14억원등을 감액하였는바, 종축장 및 산림환경연구소 이전계획과 관련하여 따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여섯째, 주요사업 투자에 대하여

주요투자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효율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별 재원 배분을 하였다고 판단되나 도민의 개발 욕구에 따라 어떠한 사업이 공익을 더 도모할 수 있고 도민을 위하여 바람직한 사업이 될것인지 시군간 균형 개발 차원에서 형평에 맞는 예산편성인지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사료되며,

특히 금회 추경에 계상된 신규 대규모 사업등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및 년내 완공 여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일곱째, 예산(안)과 관련된 행정절차이행

본 추경예산(안)중에는 조례 및 관련계획 변경등 예산편성에 앞서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졌어야 할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예산(안)과 그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동시에 의결요구하는 사례가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